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98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백혜련 · 홍기원 · 이주희
박지원 · 임호선 · 이용우
문진석 · 맹성규 · 전용기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

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지도사 자격”을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지도사 자격시험”을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u>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u></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경영지도사 자격</u>----- -----<u>경</u> <u>영지도사자격시험</u>----- -----</p> <p>5. <u>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u></p> <p>② (현행과 같음)</p>